

2010년 중간선거 이후의 경쟁법 집행 방향

공화당의 승리로 끝난 미국의 2010년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경쟁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LAW360) 및 관련 연구기관(American Antitrust Institute(AAI); 미국 반독점연구소)은 다소 상이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LAW360)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11월 2일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경쟁정책 관련 입법·예산·법 집행 등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 결과로 하원 총 435석 중 과반수를 횡성초과하는 242석을 차지하였으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였으나 의석수가 축소되었다. 차기 하원의장(the Speaker of the House)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John Boehner)는 2010년 1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 자출 식감 및 고용 회복을 위한 경제환경 창출이 2대 우선순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경쟁법 전문기들은 이러한 정책기조가 경쟁법·정책의 변화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독점정책이 경제 회복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고, 다른 경제정책들을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 관련 입법활동이 퇴보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다음 2건의 경쟁법 집행 강화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이 낮아졌다. 하나는 2009년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장인 허브 콜(Herb Kohl)을 중심으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당연위법」 법안(Discount Pricing Consumer Protection Act)이며, 다른 하나는 「보험 산업을 경쟁법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한 법(McCarran-Ferguson Act)의 폐기 법안(Health Care Reform Law; 공식 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의 주요 보직을 장악함으로써 경쟁당국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전보다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하원은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법 집행에 대한 예산 배정을 제한하는 등 부처별 예산 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자출 식감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경우에 경쟁당국은 엄격한 예산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공화당은 경쟁당국의 법 집행 우선순

위 기운데, 특히 FTC의 FTC법 제5조의 적용 확대 및 제약 시간 역자불 합의(Pay for Delay)에 대한 제재 추진에 부정적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하여 경쟁당국이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은 앞으로 몇 년간 보다 전통적인 반독점 분야인 가격 담합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당국의 인적 구성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있지만, 만약 변화가 있다면 이는 경쟁당국의 업무 어젠다(Agenda)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리더십(Leadership)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경쟁법을 급진적으로 집행할 인사가 배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 주(州)정부의 특정 반독점 이슈에 대한 견해는 그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나 뉴욕 주는 계속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다른 주들은 경쟁법 집행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AI의 전망에 의하면 하원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기업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법 집행 분야에서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향후 수년간에 걸쳐 미국 경제의 회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며 강력한 경쟁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AI가 향후에도 경쟁법 집행이 현재의 기조로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FTC(연방거래위원회)와 DOJ(법무부)의 경쟁법 집행 책임자들이 현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둘째, 재판매가격유지반독점당국이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급진적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는 점 셋째, 최근 의회에서 양당의 보수적인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쟁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는 점 넷째,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이 계속해서 반독점 사건의 9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다섯째, 경쟁정책이 반경쟁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와 대다수의 기업들을 위한 근본적 보호제도로서 계속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연방지방법원, 조사방해행위 한 영국인 CEO에게 징역 및 벌금형 선고

필 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0일, 영국의 모건 크루서블(Morgan Crucible)의 전임 CEO인 이안 P. 노리스(Ian P. Norris)의 카르텔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징역 18개월형 및 벌금 25,000달러를 선고하였다.

크리스틴 바니(Christine Varney)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판결이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Norris는 자사와 경쟁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연방 대배심 조사과정에서 대본에 따라 허위로 답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를 지휘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들을 파괴 또는 은닉하는 역할을 하는 전담팀까지 조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DOJ는 지난 2002년부터 카본(Carbon) 제품 시장에서의 카르텔을 집중 조사한바 있다.

그 과정에서 Morgan Crucible은 조사방해행위로, 그 자회사인 모거나이트(Morganite)는 카르텔 행위로 각각 법정 최고금액인 1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Morgan Crucible과 Morganite의 주요 임원들은 위증 교사, 조사대상 서류 파괴 및 은닉행위, 그 방조 및 교사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모두 복역(服役)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조사방해행위의 주모자인 Norris도 기소당했지만 자국인 영국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대하여 DOJ는 사상 최초로 경쟁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절차에 착수하였다.

Norris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간 끝에, 영국

최고법원(House of Lords)이 그를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2010년 2월 24일)함에 따라, 결국 2010년 7월 Norris는 미국으로 인도되어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같이 DOJ는 자국으로 도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용하여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다.

한국-미국 범죄인인도조약(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미국이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한국은 자국민을 반드시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반드시 자국의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역시 카르텔 조사 방해 등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부터 도피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EU ••

영국 공정거래청, ‘경쟁법 자율준수 가이던스’ 발간



영국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은 2010년 10월 19일, 기업 및 경영자의 경쟁법 준수에 도움을 주고자 ‘경쟁법 자율준수 가이던스’와 ‘기업 경영자를 위한 경쟁법 준수 가이던스’를 발간하였다.

‘경쟁법 자율준수 가이던스’(How Your Business Can Achieve Compliance)는 기업 내에서 경쟁법 준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4단계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를 위한 경쟁법 준수 가이던스’(Company Directors and Competition Law)는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경쟁법 이해수준 및 경영자가 반드시 적발 및 방지하여야 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의 수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동 가이던스(Guidance)는 2011년 1월 2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2개의 가이던스는 2010년 6월에 개정된 ‘경영자 자격박탈명령 가이던스’(Director Disqualification Orders in Competition Cases)의 후속 지침의 성격으로, 기업 경영자에게 경쟁법 관련 의무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영자 자격박탈명령 가이던스’는 공정거래청이 경쟁법 위반 기업 경영자의 경영자격 박탈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세부내용을 설명한 지침이다.

경쟁법 자율준수 가이던스(How Your Business Can Achieve Compliance)

- 기업내 경쟁법 준수 문화 형성을 위한 4단계 절차 소개
-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및 조직내 운영방안을 이하 4단계 분석에 따라 판단하도록 제안

[기본 단계] 경영자의 경쟁법 자율준수 의지 천명(Commitment)

- 경쟁법의 확실한 준수 약속이 조직 전체에 전파되어야 하며, 고위 간부·임원진의 솔선수범이 중요(Top-Down)

[1단계] Risk Identification(경쟁법 위반 위험 식별)

- 해당 기업의 영업 내용·규모·성격 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카르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법 위반’이라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 판단
 - (예) • 직원들이 워크숍 등의 행사에 경쟁기업과 함께 참여하는가?
• 직원들이 경쟁기업과 거래 및 영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가?
• 경쟁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가?
• 광고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가?

[2단계] Risk Assessment(위험의 정도에 대한 평가)

- 1단계에서 파악한 ‘위험’의 크기에 대하여 평가
 - * 경쟁기업과 의사연락을 하고 영업협약 등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판매·마케팅 부서 직원은 인사부서 직원에 비하여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음

[3단계] Risk Mitigation(위험 경감)

-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직원에 대하여 경쟁법 위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절차 수립
 - (예) • 경쟁법 준수와 유인체계의 연계(경쟁법 위반시 사규·행동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최대 해고에 이르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법무팀으로 하여금 모든 중요한 영업계약을 검토하도록 함
• 사업자단체 가입 전에 반드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사업자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에 알리도록 함

[4단계] Review(검토)

- 정기적으로 1~3단계를 검토하여 기업의 경쟁법 준수 문화 확보

기업 경영자를 위한 경쟁법 준수 가이던스(Company Directors and Competition Law)

〈 가이던스의 기본 구성 〉

- ① 경쟁법에 대한 개괄적 소개
- ②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의 유형
- ③ 경영자가 반드시 적발·예방하여야 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의 유형

* 단, 동 가이던스는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적발·예방하여야 하는 행위의 수준에 대한 판단은 이하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하고 있다.

- ① 당해 경영자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지 여부 (경영이사 v. 사외이사)
 - 일반적으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사항을 책임지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영이사에 비하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요구수준이 낮은 편임
- ② 당해 경영자가 기업 내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 경쟁법 위반 위험이 높은 분야를 관掌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인사담당 경영자에 비해 판매·가격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높음
- ③ 당해 경영자가 소속된 기업의 크기 (중소기업 v. 기업집단)
 - 기업의 크기가 작을수록 경영자가 개별 의사결정을 통하여 경쟁법 위반의 발생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요구수준이 높음

경영자 자격박탈명령 가이던스(Director Disqualification Orders in Competition Cases)

(1) 경영자 자격박탈명령(Competition Disqualification Order; CDO)의 의미

- OFT 및 특정 산업규제당국이 법원에 대하여 경쟁법 위반 책임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을 알고 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기업 경영자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15년까지 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음

(2) OFT 등의 자격박탈명령(CDO) 신청시 고려사항

- ① 경쟁법 위반 여부
 - OFT·EU 집행위원회·법원 등에 의하여 경쟁법 위반이 확정된 경우 또는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판단이 없더라도 CDO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OFT 등은 법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여야 함)
- ② 위반의 성격 및 벌금 등 금전적 제재 부과 여부
 -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 경우와 같이 위반정도가 중대할 때 바림직
- ③ 리니언시 적용 여부
 - 리니언시(Leniency)가 적용된 경우라면 CDO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④ 경영자의 책임 정도 판단기준
 - i) 경영자가 직접 경쟁법 위반에 기여한 경우
 - ii) 경쟁법 위반에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행위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지만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경우
 - iii) 당해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지만 알았어야 하는 경우
- ⑤ 가중·감경요소 유무
 - 기중요소 : 과거 위반행위 연관 경력, 증거 인멸·조사 방해 등
 - 감경요소 : 강요에 의한 위반, 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

(3) 법원의 자격박탈명령(CDO) 요건

- OFT 등의 CDO 요청에 대하여 법원은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자격박탈명령을 내려야 함
 - ① 대상자가 경영자로 있는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
 - ② 대상자가 경영자로서 기업의 경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재까지 경영자 자격박탈명령이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지만, OFT는 경영자의 경쟁법 준수 유인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금번 개정을 통하여 사전에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된 적이 없는 경우에도 CDO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본격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 EU •••

독일 연방카르텔청, ‘경제전문가 의견 작성 표준 지침’ 발간

독 일 연방카르텔청(FCO)은 2010년 10월 20일, 경쟁법 사건 심사과정에서 제출되는 경제분석 증거의 작성 원칙 및 기준 등을 명시한 ‘경제전문가 의견 작성 표준 지침’을 발간하였다.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연방카르텔청장은 “경제전문가 의견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투명성과 명료성 등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 자침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전문가 의견은 채택되지 않거나 단지 참고사항으로서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 의견 작성 표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전문가 의견은 ① 경쟁 이슈와의 관련성 ② 주장과 자료의 완전성 ③ 가정의 투명성 ④ 가정과 결과의 일관성 등의 기본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FCO의 공식 언어가 독일어이므로 전문 의견 역시 독일어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문으로 작성할 때는 독일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에 대한 최종 평가권을 가진 심사부서(Decision Division)의 비(非)경제전문가를 위하여 비전문적 요약(Non-Technical Summary)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가 의견의 목적, 방법론, 가정,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제3자의 심사자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는 사업상 비밀이 삭제된 공개 용 문서가 별도로 제출되어야 한다.

분석에 사용된 참고문헌이 있는 경우는 그 목록이 명

시되어야 하고, 표기방식은 사회과학저널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아직 학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학설을 적용할 때는 그 적용 이유와 기존 학설 적용이 부적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론적 분석 시에는 특정 가정과 경제모델을 선택한 이유와 가정의 수정에 따른 분석 결과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증 분석 시에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추론통계(Inferential Statistics) 및 계량경제 모델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자체 설문조사나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조사자에 따라 데이터가 편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데이터의 검증 가능성, 객관성, 대표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수집 방법이 전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전문가 의견 역시 다른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지만, 개별 심사부서는 사건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Europe

● ● 일 본 ● ●

공취위, 2010년 상반기 하청법 운용 상황 및 향후 추진사항 발표

공정취인위원회는 2010년 11월 12일, 상반기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이하 “하청 법”이라 한다) 운용 상황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취위의 상반기 하청법 운용 방향은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하청법 홍보 및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먼저, 공취위는 하청법 적용분야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면조사는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의 원사업자 38,046개사(제조위탁 24,782개사, 용역위탁 13,264개사)와 이 원사업자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 210,166개사(제조위탁 147,692개사, 용역위탁 62,474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면조사는 하도급거래의 성격상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기적인 서면조사를 통하여 하청거래 상황을 조사해오고 있다.

또한 물류 및 대규모소매업 분야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물류분야의 경우는 ‘특수물류지정’(2004년 3월 하주의 물류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주의 물품 운송 또는 보관 위탁시 불공정행위를 지정)의 준수 여부 및 하주와 물류업자간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물류업자 15,8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규모소매업 분야에 대해서도 대규모소매업자 350개사와 납품업체 6,000여 개 사의 2009년 거래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점감시업종은 도로화물운송업, 자동차소매업, 일반기계기구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 기계기구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과거 법 위반이

많았던 3개 업종과 현 경제상황을 감안한 2개 업종을 선정한 것이다.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비율을 높리는 등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29개사에 대하여 ‘지도’ 조치를 하였다.

착수사건은 2,689건(제조위탁 등 1,778건, 용역위탁 911건)이었으며, 사건처리 건수는 2,543건(제조위탁 1,688건, 용역위탁 855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31건, 440건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착수원인으로는 서면조사에 의한 것이 2,604건, 신고에 의한 것이 84건, 중소기업청 장관의 조치요청에 의한 것이 1건이었다. 사건처리내역은 권고 6건, 지도 2,325건, 불문(不問) 212건이다. 참고로, 공취위가 하도급대금 감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권고 또는 지도한 결과로 87개 원사업자가 4,289개 수급사업자에게 3억6,915만 엔을 반환 또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34만 엔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하청법의 홍보 및 교육활동도 전개하였다. 하청거래에 관한 4,633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하청거래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별 ‘하청거래개선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청거래 개선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4차례의 ‘이동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사업자를 위한 ‘업종별 강습회’를 실시하였다.

공취위는 향후 추진사항으로 하청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하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 실시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점감시대상업종의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11월 중에는 원사업자 단체 및 중소기업 단체에 대금 지연 지급 및 부당감액 금지 등 하청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 호주 ••

ACCC, 최대 포장식료품 공급업체의 기업결합 불허

호 주 경쟁당국(ACCC)은 2010년 11월 17일, 호주 최대의 포장 식료품 공급업체인 맷캐쉬(Metcash; Metcash Trading Limited)가 대형 할인마트 운영업체인 프랭클린스(Franklins)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불허하였다.

참고로 Metcash는 호주 전역의 소규모 식료품 소매업자들(Independent Grocery Retailers)에게 포장 식료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이다.

또한 Franklins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 주에서 80개의 직영점 및 8개의 가맹점(Franklins Supermarket)을 운영하는 식료품 도·소매업체이다.

ACCC는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동 기업결합(안)이 NSW 주 내의 포장 식료품 도매 공급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NSW 주에서 소규모 식료품점을 대상으로 하는 포장 식료품 도매 공급업체의 수가 2개에서 1개로 감소함에 따라 결합회사가 독점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 둘째,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도매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경쟁업체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

셋째, 결합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식료품 소매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하고 인근 지역 공급업체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높지 않다는 것 등이다.

한편, 다른 기업들도 Franklins의 인수를 강력히 희망하는데 ACCC는 향후에도 추가로 신고되는 기업결합(안)이 NSW 주의 포장 식료품 도매공급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Franklins 인수 희망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